

## Mobile Zone 구축 기본협약서

대구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구내무선전화서비스(이하 “Mobile Zone서비스”라 한다) 구축 관련 상호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을”이 대구·경북지역 우수 대학교인 “갑”의 교내에 Mobile Zone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따른 상호 추진 업무내용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Mobile Zone서비스의 정의) Mobile Zone서비스란 이동전화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특정 건물이나 제한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구내전화기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내에서 휴대폰으로 구내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유선전화나 휴대폰에 연결되고, 반대로 자신의 구내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구내에서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어, 휴대폰 1대로 이동전화와 구내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복합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Mobile Zone서비스 제공 장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내

제4조(Mobile Zone서비스 내용 및 범위) ① “을”은 “갑”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Mobile Zone서비스를 정보통신부에서 인가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학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인가에 따라 별도로 진행한다. ② “을”은 Mobile Zone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시 연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Mobile Zone서비스 제공 조건) ① “갑”은 “을”에게 Mobile Zone 관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설치한 장비는 Mobile Zone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을”의 소유로 “을”이 유지보수 한다. ③ “을”의 장비를 철거 또는 변경할 시에는 “갑”과 “을”은 반드시 사전합의 후 시행한다. “갑”은 “을”의 Mobile Zone서비스 제공에 따라 “갑”의 이용고객이 “을”의 Mobile Zone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계약시 “갑”과 “을”이 별도 서면합의(세부협약서) 후 진행한다.

제6조(“을”의 Mobile Zone서비스 구축 세부사항) “을”이 설치할 장비목록 및 점유 공간 등 구축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본 협약 체결 후 상호 서면합의(세부협약서)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Mobile Zone서비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을”이 담당하나, 기존 “갑”이 보유하고 있는 PABX와의 연동 등 “갑”의 협조를 요할 시에는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최상의 Mobile Zone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갑”은 “을”의 Mobile Zone서비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출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Mobile Zone 장비에 대한 도난 및 재해방지를 위한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동일업종 약정 체결) “갑”은 기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약정서 본 협약 체결 후부터의 유효기간 동안은 본 협약상의 “을”의 Mobile Zone서비스와 유사한 “을”의 동종 경쟁사업자의 유사 서비스를 교내 도입 시에는 반드시 “을”과 상호 서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조사항) ① “갑”은 “을”의 Mobile Zone서비스 설치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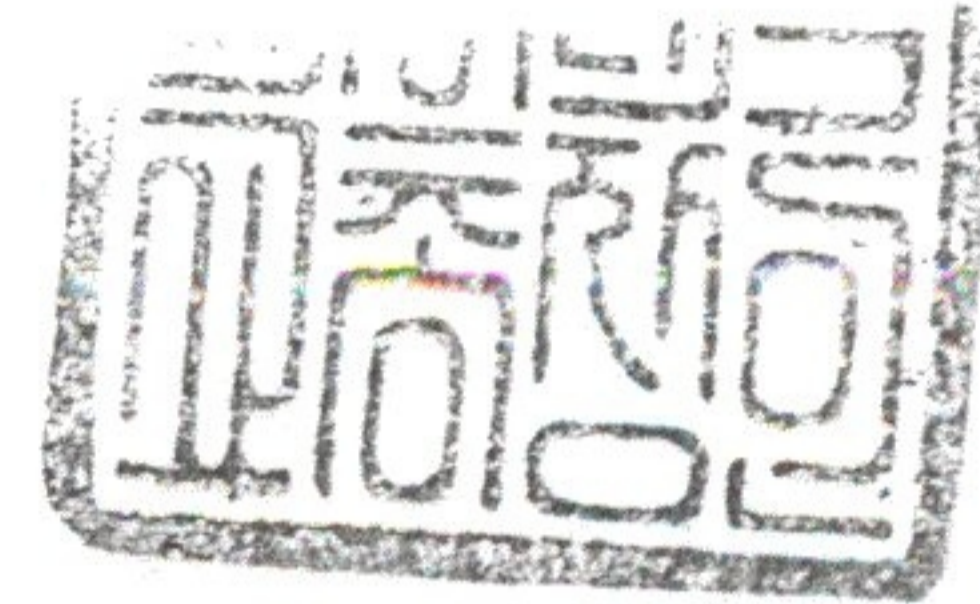
② “을”은 Mobile Zone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공사 진행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상호 협조에 의해 진행한다. ③ “을”은 Mobile Zone서비스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갑”에게 지원 의뢰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지원 및 협조한다. ④ “갑”은 “을”의 교내홍보 및 판매활동을 허용하며, 이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단, “을”은 반드시 갑의 사전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쌍방 “갑”과 “을”이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약정협약 체결일로부터 “갑”과 “을”이 합의하여 Mobile Zone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날까지로 하며, Mobile Zone서비스 종료는 6개월 전에 상호 서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은 Mobile Zone서비스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기관에 적절하지 못한 상업화의 우려가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 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④ 본 협약서가 체결된 후 “을”은 조속한 시일내에 Mobile Zone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제11조(보완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상호 동의 서면합의(세부 협약서) 하에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2년 7월 3일

위의“갑”

교 명 : 대구대학교  
주 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 표 : 총 장 윤 덕 흥 (인)

위의 “을”

상 호 : SK텔레콤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대 표 : 대표이사 표 문 수 (인)

위 대리인

SK텔레콤 대구지사장 : 최 호 (인)





## Mobile Zone Infra 구축 세부협약서

대구대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와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Mobile Zone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2002년 7월 3일 체결한 기본 협약서(이하 “기본협약”이라 한다)에 부가하여 “을”이 “갑”의 구내에서 Mobile Zone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Mobile Zone서비스란 “을”의 이동전화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특정 건물이나 제한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구내전화기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내에서 휴대폰으로 구내 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유선전화나 휴대폰에 연결되고, 반대로 자신의 구내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구내에서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어, 휴대폰 1대로 이동전화와 구내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복합서비스로 구내무선전화 서비스 또는 WPABX 서비스를 말한다. ② WPABX(Wireless 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시스템이란 Mobile Zon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장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목록은 <첨부1>과 같다. ③ PABX(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란 전화망의 구내교환기로서 구내의 내선(구내 전화회선)전화기 상호간 또는 내선전화기와 국선(전화국 전화회선)간의 교환 접속을 행하는 교환기를 말한다.

제3조(설치 장소 및 일정) ① WPABX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소 및 소요 공간과 통신관로는 “갑”이 제공하며,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첨부2>와 같다. ② “을”은 WPABX 시스템을 2002년 9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며, “갑” 또는 “을”의 사정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완료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Mobile Zone 서비스 제공 장소) “을”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에 위치한 “갑”의 경산캠퍼스를 대상으로 Mobile Zone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설치 비용 및 절차) ① WPABX 시스템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은 “을”의 비용으로 설치하며 WPABX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필요한 PABX 관련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을”은 WPABX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갑”과 상호 합의한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제6조(WPABX 시스템의 소유권) ”을“이 설치한 WPABX 시스템 장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7조(운용 및 유지보수) ① WPABX 시스템의 운용은 “을”이 담당하며 PABX의 운용은 “갑”이 담당한다.

② “을”이 설치한 WPABX 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의 WPABX 시스템 제공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④ “갑”은 WPABX 시스템의 설치, 운용, 장애 처리 등을 위하여 “을”이 “갑”의 구내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 “을”은 WPABX 시스템 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갑”에게 지원을 의뢰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을”은 WPABX 시스템에 대한 도난 및 재해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WPABX 시스템의 이설, 변경 및 철거) ① “을”이 설치한 WPABX 시스템이 “갑”의 시설물 운영을 저해하거나 “을”의 WPABX 시스템과 관계없이 “갑”의 시설물 자체의 변경으로 동 장비를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이설 등을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을”이 전 항의 장비를 이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용요청을 하여야 하며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③ “을”은 본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의 WPABX 시스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협약기간 내에 WPABX 시스템을 철거할 수 없다.

제9조(협약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2년 7월 3일 부터 2007년 7월 2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기본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협약 만료일 15일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협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본 협약은 협약 만료일의 익일부터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0조(협약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갑” 또는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부도, 해산, 워크아웃,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신청으로 본 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상대방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여 본 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최고 및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WPABX시스템 또는 PABX가 제3자에 의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②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책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는 본 협약기간은 물론이고 협약종료 이후에도 3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Mobile Zone서비스 이용) ① “갑”은 구성원의 Mobile Zone 서비스를 위해 WPABX 시스템 등록시 “을”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한 별도 이용계약을 작성하며, Mobile Zone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성원(이하 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의 변경사항 발생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구성원의 Mobile Zone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기존 “을”의 이동전화 가입자 외에 “갑”의 구성원을 “을”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도록 권장 및 홍보한다. ③ “갑”은 Mobile Zon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④ “갑”의 Mobile Zone 서비스 가입 및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은 “을”이 지정한 위탁 대리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해석)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갑”과 “을”간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약과 기본협약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하며, ”을“의 WPABX 시스템 적기 사용 및 설치된 WPABX 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17조(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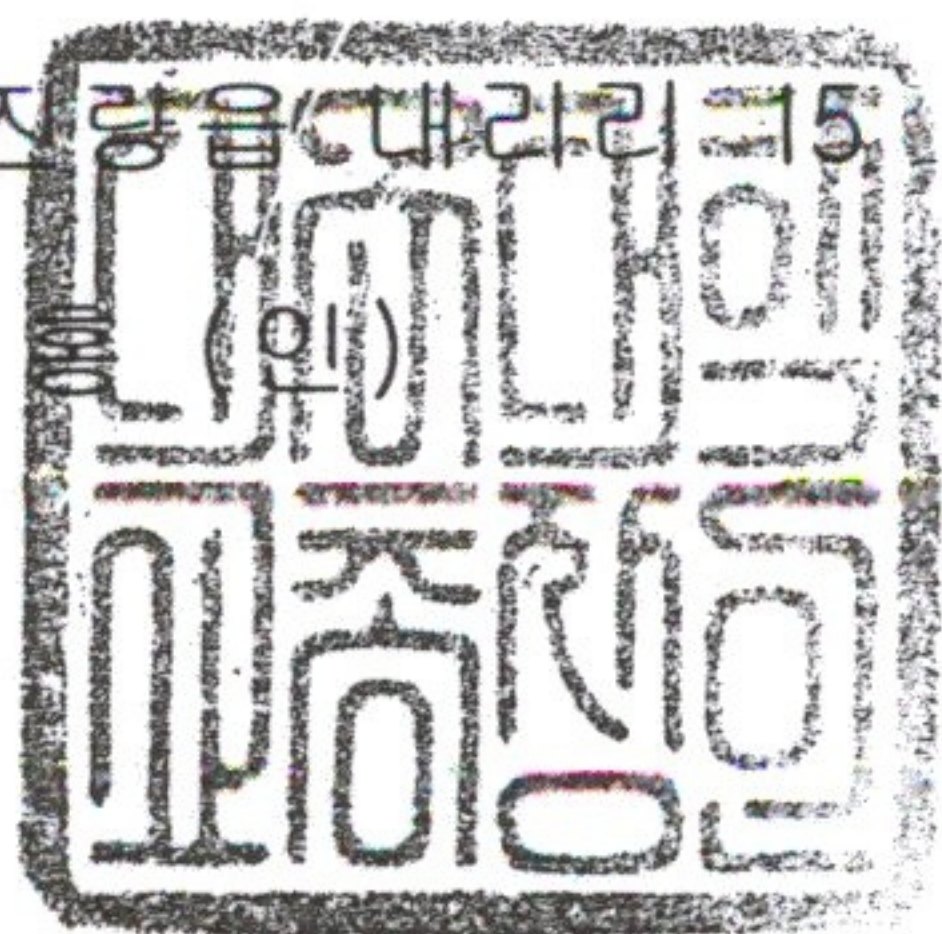
2002년 10월 22일

위의 “갑”

교 명 : 대구대학교

주 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라리 15

총 장 : 총 장 윤 덕 (인)



위의 “을”

상 호 : SK텔레콤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 이사 : 대표이사 표 문 수





첨부 1. 대구대학교 망 설계 내역

구분	기존장비 활용	장비 신설	수량	비고
WOS CON		정보통신관 PABX실	CON 1식	
기지국	도서관 기지국			
광중계기		연구동 옥상 (법대옆 신설건물) 공과대 옥상	1식 1식	
광분산(ICU형)		본관 건물내	1식	
기타	학교입구 광중계기	소규모 지하공간 소형중계기 설치	필요수량 1식	

# 광케이블 신설 : WOS CON기지국, 광중계기지국, 광분산기지국 구간  
 # 학교내 장비신설 지역 : 전기설비, 접지설비, 간이철탑 및 부대설비 설치 또는 학교로 부터 임차사용



첨부2. 대구대학교 망설계 내역-Lay out

